

〈解決方案〉

現在 司書教師는 特殊教師로써 昇進의 길이 막혀 있으므로 司書教師도 一般教師와 마찬가지로 1級司書教師, 2級司書教師로 區分하여 昇進의 길이 마련 되도록 措置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議 4. 地方 公共圖書館 運營에 所要되는 財源을 確保 할수 있도록 措置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解決方案〉

現在 公共圖書館은 所屬이 어디던간에 財政 關係가 萎縮一路에 있습니다. 이를 解決하기 위하여는 地方交付稅法 및 同施行令에 圖書館費를 挿入하여 圖書館을 合理的으로 運營할수 있도록 措置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月1日 公翰에는 回答이 明示되어 있지 않으나 繼續하여 當局과 折衷中에 있으므로 回信이 오는데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表는 編輯者註.

### 司書教師에 따른 教育公務員法 및 同報酬規程 改正試案

學校圖書館大會에서 採擇된 建議事項으로 다음과 같이 教育公務員法 및 同報酬規程 改正案을 文 敎部長官에게 提出하였던바 回信이 아직 없으나 繼續折衷中에 있습니다. —編輯室—

圖書館法施行令의 公布 實施에 따라 各級學校에 司書教師가 配置될것으로 意料되으나 이에 따른 教育公務員法 및 同報酬規程에 다음과 같은 矛盾이 있습니다.

#### 一. 現行 公務員法 및 同報酬規程의 矛盾點

1. 圖書館法施行令 第6條 1·2項에는 國民學校, 中·高等學校에 司書教師를 두게 되어있으나 現行教育公務員法의 資格基準에는 各級學校別의 規程이 없습니다.
2. 現行法의 資格基準대로하면 國民學校의 司書教師는 教育公務員 報酬規程의 別表 4의 基本 號級表(다表)에 依하여 初任俸이 國民學校 校監보다 높은 待遇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3. 現行法의 資格基準에 依하면 國民學校 教育을 專擔하고 研究할 國民學校 敎師資格證 所持者에게는 國民學校 司書教師가 될수있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4. 大學卒業者로서 在學中 所定の 敎職科學點을 履修한 者는 2級 正敎師가 될수 있으나(教育公務員法 別表1 中等學校 2級正敎師 資格基準 3項 參照) 大學卒業者로서 在學中 圖書館學科를 專攻하고 所定の 敎職 課程을 履修한 者가 高等學校 司書教師가 되면 高等學校 準敎師의 待遇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教育公務員 報酬規程基本 號級表 나表 參照).
5. 中等學校 正敎師以上の 資格證을 所持한 現職敎師가 所定の 司書教師 講習을 履修하여 司書教師

로서 任命될 경우는 既得한 號級(基本號級表 比較 參照)보다 그 號級이 顯著히 格下되어야 하는 矛盾이 있습니다(1964年度까지 司書教師 養成을 336名이나 시켰으나 現職圖書館에 勤務하고 있는 實數는 194名에 不遇한 理由도 이 矛盾에서오는 證據입니다.)

#### 二. 教育公務員法(法律1647號)의 改正案(司書教師)

教育公務員法 別表 1의 司書教師의 資格基準을 改正하고자 하는 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現教育公務員法 別表 1의 司書教師 資格基準

學校別	中等學校	國民學校	特殊學校	幼稚園
資格	1. 大學卒業者로서 在學中 圖書館學科를 專攻하고 所定の 敎職課程을 履修한 者 2. 中等學校의 準敎師 以上の 資格證所持者로서 所定の 司書教師 養成講習을 받은 者			

##### 2. 改正案(同法)

資格	中等學校	國民學校
一級司書敎師	1. 中等學校 2級司書敎師의 資格證所持者로서 3年以上의 教育經歷을 가지고 所定の 再教育講習을 받은者	1. 國民學校 2級司書敎師 資格證 所持者로서 3年以上의 教育經歷을 가지고 所定の 再教育講習을 받은者

	2. 中等學校 正教師資格證 所持者로서 3年以上의 教育經歷을 가지고 所定の 司書教師 講習을 받은 者	2. 國民學校 正教師資格證 所持者로서 3年以上의 教育經歷을 가지고 所定の 司書教師講習을 받은 者
一級 司書教師	1. 大學卒業者로서 在學中 圖書館學科를 專攻하고 所定の 敎職課程을 履修한 者	1. 大學卒業者로서 在學中 圖書館學科를 專攻하고 所定の 敎職課程을 履修한 者로서 補修教育을 받은 者
	2. 中等學校 準敎師資格證 所持者로서 2年以上의 教育經歷을 가지고 所定の 司書敎師講習을 받은 者	2. 國民學校 準敎師資格證 所持者로서 2年以上의 教育經歷을 가지고 所定の 司書敎師講習을 받은 者

三. 教育公務員 報酬規程(大統領令 第1915號)의 改正案(司書敎師)

1. 教育公務員 報酬規程 別表4의 教育公務員 基本號級表 다表 및 同規程 別表 3의 教育公務員 經歷數 控除表를 改正하고자하는 案은 다음과 같습니다.

A. 現教育公務員 基本號級表(司書敎師에 關한)

別表 4

(다)

資 格 別	基 本 號 級
司 書 敎 師	15號 1級
實 技 敎 師	20號 1級
養 護 敎 師	20號 1級

(8面에서 繼續)

矛盾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特殊法人이나 民間團體의 圖書館에 있어서도 반드시 司書의 資格을 認定하여 준다고는 하기 어려운 것임으로 이와 같은 경우를 考慮하여 반드시 身分과 資格에 對한 保障이 確立되어야 할 것이 要求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國家나 社會로 부터 專門職인 司書

B. 改正案(司書敎師)

別表 4

(나)

資 格 別	勤務學校別			
	高 校	中 校	國民校	特殊校
校長 또는 特殊學校長	9號 2級	11號 1級	13號 2級	9號 2級
校監, 1級正敎師 및 1級司書敎師 또는 特殊學校校監	11號 2級	13號 1級	15號 2級	11號 1級
2級正敎師 및 2級司書敎師 또는 特殊學校敎師	13號 1級	15號 1級	17號 2級	14號 1級
準敎師	14號 2級	17號 1級	19號 2級	—
敎導敎師 또는 特殊校敎導敎師	11號 1級	13號 1級	—	11號 1級

2. 理由; 教育公務員法の 改正案(本建議案)의 司書敎師의 資格基準이 正敎師와 같은 水準의 學歷, 教育經歷, 講習履修者이기 때문입니다.

四. 法改正後의 經過措置

本建議案에 依한 法改正 以前에 發付된 司書敎師資格證은 一級 司書敎師 資格證으로 看做하면 될 것입니다.

에게 큰期待를 가질수 있게 되는 것이다.

註: 이 글中 第3章 (公務員으로서의 特殊圖書館職員)의 內容은 國會圖書館報 1965年 4月號에 筆者가 「專門職으로서의 司書職」이란 題目으로 圖書館法 施行令과도 關連하여 發表한바 있음.

(筆者 國會圖書館 圖書課長)